

간호대학 강사 임용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19.0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이하 “강사임용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간호대학 강사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지침은 간호대학 강사 신규채용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제3조(자격)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교과목의 특성상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신규채용방법 및 절차) 신규채용은 강사임용규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따른다.

제5조(제출서류) 신규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채용지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총괄연구업적 목록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교육계획서 1부

제6조(신규채용후보자 심사) ①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되 지원자가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일 경우 각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대상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 항목 및 배점(100점 만점 기준)중 서류심사는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적격판단),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40점),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30점)으로 하고 면접심사는 임용적합성(30점)으로 한다.

④ 심사는 [별표1]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총점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서류심사(전공분야와의 적합성)은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점수가 ‘상’ 또는 ‘중’ 일 경우 적격으로 인정하고 ‘하’ 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⑤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은 지원자의 전공과 채용분야와의 일치 및 유사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⑥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40점)은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지속적인 연구실적물 발표 및 연구실적물의 수준, 학문에의 기여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⑦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30점)는 강사에 대한 동기와 적성, 이론 및 실무교육의 목표, 교육기법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⑧ 임용적합성(30점)은 교육자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⑩ 종합평가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재임용기회제공 및 절차) 재임용은 강사임용규정 제18조를 따른다.

제8조(재임용 심사) ① 재임용후보자 심사 항목 및 배점(100점 만점 기준)은 교육활동평가(80점), 기관장평가(20점)이며, 교육활동평가는 강의평가(30점), 강좌운영(30점),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20점)으로 나뉜다. 단, 필요에 따라 가산점(5점)을 줄 수 있다.

- ② 심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③ 강의평가(30점)는 임용기간 중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결과의 평균값으로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단,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목, 팀 티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의 평가를 제외 한 합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다.
- ④ 강좌운영(30점)은 강의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험 및 성적 평가, 성적 전산입력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⑤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20점)은 교수자료 및 교수법 개발 등의 항목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⑥ 기관장평가(20점)는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등에 대한 평가로 학장이 실시한다.
- ⑦ 가산점(5점)은 그 밖의 업적(수상, 서훈, 표창 등) 등에 대한 평가로 학장이 실시한다.
- ⑧ 심사 결과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 재임용 부적격 사실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진술은 부적격 사실 통지 후 15일 이후에 하도록 하며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심사위원) ① 제6조와 제8조의 심사를 위하여 학장은 해당 전공(교과)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

축하며 단계별 심사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 ②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제출 및 채용후보자 추천) ① 기관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
에 대한 응모 및 심사결과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후보자를 결정하고, 채용후
보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기재한 강사채용후보자 심사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③ 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자를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사임용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06.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 (해당 강사를 신규채용하
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강사 신규채용 총괄표

간호대학

대상자	채용분야		성명		
	채용인원		생년월일 (만 세)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모집대상 전공(교과) 분야와의 적합성 (적격판정)	전공(교과)분야 일치 정도		적격 또는 부적격		·‘하’일 경우 부적격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40%)	교육 및 실무경력		30		
	연구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10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30%)	이론 및 실무교육의 목표, 교육 기법 등 종합평가		30		
임용적합성 (30%)	인격과 품위, 청렴도, 법규준수 등 종합평가		30		
합 계			100점		

2019년 월 일

직명: 교무부학장 성명 (인)

직명: 간호대학장 성명 (인)

[별표 1-1]

강사 신규채용 서류 심사표

간호대학

대상자	채용분야			성명		
	채용인원			생년월일 (만 세)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모집대상 전공(교과) 분야와의 적합성 (적격판정)	전공(교과)일치			상		·‘하’일 경우 부적격
	전공(교과)유사			중		
	전공(교과)불일치			하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40%)	교육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30		·교육 및 실무경력에 따라 점수부여
		3년 이상~5년 미만		27		
		3년 미만		24		
	연구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상중하)			10		·연구업적의 양적수준 ·연구실적물 발표 빈도 ·학문예의 기여도
				8		
				5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30%)	이론 및 실무교육의 목표, 교육 기법 등 종합평가 (상중하)			30	
25						
20						
합 계				70점		

2019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인)

[별표 1-2]

강사 신규채용 면접 심사표

간호대학

대상자	채용분야		성명		
	채용인원		생년월일 (만 세)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임용적합성 (30%)	인격과 품위, 청렴도, 법규준수 등 종합평가		30		·교육자로서의 자질, 인 성,태도 등
합 계			30점		

2019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인)

[별표 2]

강사 재임용 총괄표

간호대학

대상자	채용분야		성명		
	담당과목명		생년월일 (만 세)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교육활동평가 (80%)	강의평점		30		
	강좌운영		30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20		
기관장 평가 (20%)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에 교원 으로서의 품위, 대학원 기여도 등		20		
가산점 (5%)	수상, 서훈, 표창 등이 있을 경우		5		
합 계			100점 (가산점 제외)	(가산점 점)	

2019년 월 일

직명: 교무부학장 성명 (인)

직명: 간호대학장 성명 (인)

[별표 2-1]

강사 재임용 교육활동 심사표

간호대학

대상자	채용분야		성명		
	담당과목명		생년월일 (만 세)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교육활동평가 (80)	강의평점	3.5 이상	26-30		
		3.0 이상~3.5미만	21-25		
		3.0 미만	0-20		
	강좌운영	강의계획서 작성, 시험 및 성적 평가, 성적 전 산입력 등	30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교수자료 및 교수법 개 발	20		
합 계			80점		

2019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인)

[별표 2-2]

강사 재임용 기관장 평가표

간호대학

대상자	채용분야		성명		
	담당과목명		생년월일 (만 세)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기관장 평가 (20)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에 교원 으로서의 품위, 대학원 기여도 등		20		
	소계		20		
가산점 (5)	수상, 서훈, 표창 등이 있을 경우		5		
	소계		5		
합 계			20점 (가산점 제외)	(가산점 점)	

2019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인)